공공기관별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 경남개발공사

__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직 무	채용인원	직 무 내 용	비고
사무(행정) 7급	경영지원 사업관리	2명	◆ 경영기획, 경영평가, 감사, 계약 및 구매, ◆ 고객관리, 홍보, 토지보상 및 분양 등	
사무(회계) 7급	회계분야	1명	◆ 자금관리 및 예산·결산처리, 원가관리 등 ◆ 그 밖에 행정업무 전반	
기술(건축) 7급	건축분야	1명	◆ 건축사업 관련 계획, 설계, 용역감독, 사업 인·허가 등 사업전반	

[※] 향후 순환근무 원칙 등에 따라 입사 이후 업무는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응시자격
응시연령 및 병역사항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정년 만60세)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현재 군복무중인 경우 단계별 시험응시 및 임용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학력 및 자격	► 사무(행정, 회계) 제한없음 ► 기술(건축)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중 1개이상 자격증 소지자
지 역 (거주지)	▶ 아래의 가)항, 나)항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가)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최종시험일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로 되어 있는 자 나) 경상남도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
직원채용 결격사유	1. 미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만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4. 병력을 기피한 자 5. 전직에서 징계사유로 면직되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자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경남개발공사 인사규정 제14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경남개발공사 공고문 참조)
기 타	▶ 임용일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한 자

2. (재)경남테크노파크

□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부서	채용인원	직 무 내 용	비고
	조선해양 본부(고성)	1명	◆ 조선해양산업 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기획◆ 조선해양본부 구축 장비 활용 및 관리업무 수행	구분모집
연구직 5급	지능기계 본부(거창)	1명	 ◆ 승강기 산업육성 추진사업 수행 ◆ 승강기 산업육성 신규사업 발굴 및 기획 ◆ 승강기산업팀 보유 장비운영 	구분모집

- ※ 상기 업무는 대표 업무에 관한 기술이며, 부서 내 다른 업무도 수행 가능
- ※ 채용 이후 기관 조직개편 등으로 직무 및 업무가 일부 달라지거나 전보될 수 있음

□ 응시자격

구 분	기본(공통) 응시자격
응시연령 및 병역사항	► 제한없음 ※ 만60세 미만인 자 ※ 현재 군복무중인 경우 단계별 시험응시 및 임용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학력 및 경력 (연구직5급)	 ► 전공 분야: 이공계, 인문사회, 경영·경제, 산업정책 분야 1. 상기 전공 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2. 상기 전공 분야 학위소지자로서 정부투자기관, 기업체, 경제기관·단체, 연구소 등에서 연구원급 이상 경력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6년 이상 경력자 4.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기 전공분야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제1호 내지 제5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자격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충족 시 지원이 가능함
지 역 (거주지)	▶ 제한없음
직원채용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규정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본 재단 또는 타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자 4. (재)경남테크노파크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결격사유 의무 포함 사항)
기 타	

3. 경남신용보증재단

□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채용전형	채용인원	직 무 내 용	비고
일반직 6급	지역인재 (제한경쟁)	2명	◆ 금융사무(보증지원, 보증운영, 사고관리, 채권관리),	구분모집
	일반전형 (공개경쟁)	1명	기획사무, 총무인사, 교육컨설팅, 금융복지상담 등	구분모집

구 분	기본(공통) 응시자격
응시연령 및 병역사항	► 제한없음 ※ 만60세 미만인 자 ※ 현재 군복무중인 경우 단계별 시험응시 및 임용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학력 및 경력	► (일반전형) 제한없음 ► (지역인재) 1. 경남지역 소재 대학 2. 경남지역 소재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 경남지역 소재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는 대학 진학 사실이 없어야 함 ※ 위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예정인 자 (졸업예정자는 2025년 2월 이전(2025.02.28.)이 졸업예정인 자에 한함.)
지 역 (거주지)	▶ 제한없음
직원채용 결격사유	1. 미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만 3년을 경괴하지 아니한 자 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4. 병역을 기피한 자 5. 전직에서 징계사유로 면직되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자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비위채용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
기 타	

4.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직무	채용인원	담 당 업 무	비고
일반직 7급	문화예술	2명	문화예술·문화산업 분야 행정업무	

※ 근무지는 문화예술진흥원 시설 중 발령

-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시설 현황 >

시 설 명	소 재 지
경남문화예술진흥원(본청)	합천군 덕곡면 학리1길 58
경남음악창작소 뮤지시스	김해시 김해대로 2060(김해문화의 전당 M층)
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김해시 관동로 14
경남콘텐츠코리아랩, 웹툰캠퍼스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동남전시장 동관)
동남아트센터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본관동)
경남e스포츠상설경기장	진주시 동진로 33(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경남글로벌게임센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경남대학교 한마관)

구 분	응 시 자 격
응시연령 및 병역사항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정년 만60세) ► 병역제한 없음 ※ 현재 군복무중인 경우 단계별 시험응시 및 임용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학력 및 경력	▶ 제한없음
지 역 (거주지)	▶ 제한없음
직원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기타	9. 승극의구시포시 중탁기파 시킬에 ᆻ는 시

5. (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채용직급	채용인원	직 무 내 용	비고
일반직(행정)	부장	1명	◆ 조직, 인사, 예산, 회계, 시설관리, 위원회 운영, 경영전략 등 경영지원부 업무 총괄	
일반직(행정)	주임	1명	 ◆ 교육사업 기획·관리·운영 ◆ 예산, 회계 등 행정업무 및 여성·가족 정책 분야 연구지원 업무 등 	
일반직(시설유지관리)	사원	1명	◆ 시설유지관리(전기) 및 행정업무 등	

응시면령 및 병역사항		
병역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사람 ▶ 일반적(부정) 1.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10년 이상 사무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6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안정되는 사람 ▶ 일반적(주임) 1.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4년 이상 사무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8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8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안정되는 사람 ▶ 일반적(사원) 1.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안정되는 사람) 2.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안정되는 사람) 2.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에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일 선고유에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에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형법」제35조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발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발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가나 형 또는 지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지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 유예를 선고받는 후 그 집행유에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생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상육력범죄 나무이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이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대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10.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구 분	응 시 자 격
1.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10년 이상 사무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6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일반직(주임) 1.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4년 이상 사무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일반직(주임) 1.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4년 이상 사무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8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일반직(사원) 1.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지 역 (거주지) 지 역 (거주지) 지 현 기차년 등에 보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우에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발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발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목에를 선고받으 그 그 형양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사람(합행 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정보호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정보호에 관한 별률」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정보호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정보호에 관한 별률」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정보호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정보호에 관한 별률」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정보호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10년의 사람을 모임하다 지급하고 함께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대상 사람을 모임하고 사람을 보임한 사람을 모임하고 자란이 되었다고 함께 2조에		
(거주지)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이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10.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학력 및 경력	1.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10년 이상 사무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6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일반직(주임) 1.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4년 이상 사무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8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일반직(사원) 1.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이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기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원기 기원역법」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10.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 제한없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어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기 타	